

# 朝鮮後期 兒童救恤 에 관한 一 研究

— 正租時 〈字恤 典則〉을 中心으로 —

崔 元 奎\*

## I. 머리말

본고는 조선시대 아동구휼제도의 집대성이라 할수있는 〈字恤典則〉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후기 아동구휼제도의 성격과 실상을 구명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조 치국의 요체였던 “經國大典”으로부터 〈字恤典則〉에 이르기까지 아동구휼제도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어 〈字恤典則〉의 성립배경과 성립경위 및 그 내용을 살펴본 후, 사료에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아동구휼실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字恤典則(조휼년칙)〉은 조선 正租7년(1783)에 반포된 유기아, 행걸아의 구제에 관한 법령으로 이에 대한 소개·연구는 그것이 제정된 正租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아동구휼제도로서의 〈字恤典則〉의 역사적 성격규정을 위해 먼저 역사적 비교연구(historical comparative study) 방법에 의한 법령들의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 연구방법은 조안 하긴스(Joan Higgins)가 설명하듯 특정 사회정책의 변화를 일정기간에 걸쳐 비교연구함으로써 정책의 변화를 기술하기도 하고 사회입법의 이정표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 방법이다<sup>1)</sup>. 본고에서는 〈字恤典則〉의 역사적 성격규정을 위해 “經國大典”으로부터 〈字恤典則〉에 이르기까지 아동구휼법령들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역사적 비교연구를 통해 법령들의 내용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날줄(經)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 Joan Higgins, States of Welfare,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tson, Oxford, 1981.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字恤典則>이 제정 반포된 후 1년여 동안 사료에 나타난 구휼사례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아동구휼실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당시의 아동입양실태를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막연하게 주장되어왔던 다음과 같은 언명들에 대해, “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대두하였다”, “전통적인 입양은 동성동본의 남아에 한정되었다”, “전통적인 입양은 가계를 계승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등과 같은 언명들의 진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II장과 제III장은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비교연구의 산물이다. 제II장에서는 “經國大典”에서 <字恤典則> 이전까지의 주요법령들의 변천을 기술하고, 제III장에서는 <字恤典則>을 중심으로 그것의 성립배경, 성립경위 및 내용에 대해 설명이 있을 것이다. 제IV장은 사례들에 대한 분석으로, 正祖 7~8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아동구휼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 II. <字恤典則> 이전의 아동구휼제도

### 1. “經國大典” <惠恤條>

조선조 치국의 요체였던 “經國大典”에는 아동구휼과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飢寒 焉乞無族親者 老人無扶護者 量給依料
- 遺失小兒 漢城府本邑授原育人 官給依料(過十歲還無告者 許原育人役使)

위의 두 조목은 내용상 매우 간략하지만 아동구휼과 중요한 이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요구호자의 구호와 관련 친족책임의 이념과 최소한의 국가개입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절식자나 노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국가의 개입이전에 이들을 부양할 만한 친족이 없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기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은 잠시

모호하였다가 원래 기르던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 사이 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 “經國大典” 반포이후의 아동구출사실을 살펴보자. 다음의 기록들은 역대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國朝寶鑑”중에 나오는 기록들이다.

- 중종 6년에 경향각지에 명령하여 내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도록 함
- 명종 3년에 명령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내버린 아이를 다른 사람이 거두어 길렀을 경우에는 영구히 그 기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여 옛법을 거듭밝힘
- 현종 3년 봄 정월에 내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도록 경향각지에 유시함
- 현종 12년 여름 4월에 유기아를 거두어 기르는 법을 세우니 무릇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거둔 자는 한성부에 알려져서 공문을 받도록 하되 자식으로 삼든지 노비로 삼든지는 그 임의대로 하게함.<sup>2)</sup>

이상의 사례들은 유기아를 거두어 길렀을 경우 기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며 국가의 개입내지는 역할이 제한적이며 행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들 사례들은 위에서 논의한 바 있는 최소한의 국가개입이념의 실체를 보여준다 하겠다.

## 2. <賑恤廳臨時事目>과 “續大典”<惠恤條>

肅宗 21년(1695)에 반포된 <賑恤廳臨時事目>은 일면 <收養臨時事目>이라고도 하며 “經國大典”의 후속법령으로서, “經國大典”에 비해 아동구출에 관한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하다. 동 <事目>은 7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동 <事目>의 별칭이 <收養臨時事目>인 것으로 알 수 있듯 거의 입양(收養)과 관련된 것들이다. 12세 이하의 유리결식아동을 영구노비로 한다는 것 13세 이상의 유리결식자들 고공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收養을 둘러싼 재반 비리들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는 것 등이 위 <事目>의 큰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sup>3)</sup>. “經國大典”<惠恤條>가 거의 순수하게 유리결식아동의 구출과 관련된 선언적 국가규정이라면 위의 사목은 이들의 사회적 처우와 관련된 신분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續大典”은 <收養臨時事目>이 반포된지 50여년이 지난 英祖 20년(1744)에 편

2) “牧民心書”<愛民六條> 慈幼篇에서 재인용.

3) “秋官志”(三篇)<老律部> 定制 참조.

유사한 내용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 유기아를 거두어 기르는 것은 3살로하되 연거픈 흉년이나 큰 흉년을 만나면 8-9살 혹은 15살로 한다.
- 흉년의 정도와 收養한 기간의 장단 및 양편(수양인과 피수양인)의 정상과 원하는 바를 따라 영구노비, 일대노비, 또는 기한부 노비로 한다.
- 거두어기른지 3개월 이전에 부모나 친척이 찾아가려 할 때는 소비된 곡식의 두배를 갚은 후 허락하고 3개월이상이 지나면 허락하지 아니한다.
- 公私賤이 결혼하여 유기아를 收養했을 때 유기아가 장성한 후 공천이나 사천이나를 두고 주인들이 쟁송하여 양쪽이 부당하면 유기아는 양민으로 돌린다<sup>4)</sup>.

위의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 유기아입양을 둘러싸고 나이, 신분, 생육관계보호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賑恤廳臨時事目>에 비해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체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사무역시 <賑恤廳臨時事目>에서처럼 요구호아동의 구휼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고는 하나 본질적인 신분법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經國大典” 이래의 복지이념인 최소한의 국가개입이념과 아동구휼상의 民家收養原則에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III. <字恤典則>의 성립과 내용

#### 1. <字恤典則>의 성립

<字恤典則>의 성립은 조선후기 사회변동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성립배경과 경위는 <典則>이 제정된 正祖7년(1783)을 전후한 주요사건들의 이해를 통해 밝혀질 수 있으리라 본다. <典則> 성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正祖 6-7년의 연이은 흉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正祖代의 각종 진휼사실을 기록한 “惠政要覽”에는 당시 흉년의 폭과 강도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正祖6년에는 충청, 경기, 경상, 전라도 등 중부 이남지역에 대흉이 들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전국8도에 걸쳐 널리 흉년이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4) “禮大典” <禮典> 惠恤條 참조.

5) “惠政要覽”(卷一, 二) 참조.

통작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종의 사회정책시행을 주청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字恤典則〉은 여러 사회정책 중 행걸아, 유기아의 구제와 관련된 정책이다. 전통사회에서 이들 요구호아동들의 출현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원인이야 어떻든 일단 버려진 아동이나 떠돌며 구걸하는 아동의 경우 '생존' 자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흉년의 경우 '식량난'으로 인하여 요구호 아동의 수는 증가하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자원(즉 식량)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제 우리의 논의를 〈字恤典則〉의 성립경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 보자. 다음의 기록은 正祖 7년 11월의 “日省錄” 기록에 근거한 〈字恤典則〉의 성립경위이다.

正祖 7년 11월 3일 : 慶慕宮에서 주요 대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흉년에 대처한 논의 도중 왕에 의해 유기아 구제문제가 거론되어 절목을 만들기로 결정.

正祖 7년 11월 4일 : 전날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절목을 지어 바치도록 함

正祖 7년 11월 5일 : (〈字恤典則〉)의 전교가 내려짐. 각도의 방백, 수령 및 각 동리의 존위들이 구할에 힘쓸 것을 왕이 당부.

正祖 7년 11월 8일 : 왕이 대신들을 문책함(이때까지 왕에게 보고된 사례가 한건도 없었음) 대신들이 왕에게 사죄. 賑恤廳에서 처음사례보고, 正祖는 留養중인 냉아에 대해 각별한 구할을 지시.

正祖 7년 11월 12일 : 〈字恤典則〉 반포 堂上官 鄭昌順이 한글로 번역

正祖 7년 11월 13일 : 유기아를 처음 발견 보고한 군졸에게 광복 1필 시상.

〈字恤典則〉의 제정 반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점은 동법령의 취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반포했다는 점이다. 위의 기록에서 보듯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당상관 정창순이었다. 조선시대의 관용문자가 한자였고 모든 기록 문서가 한문으로 기술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字恤典則〉와 같은 법령을 한글로도 번역하여 반포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6) 첫째의 원인은 병란이나 기근으로 인하여 자식을 파는 경우(賣兒)이며, 둘째는 자식을 버리는 것으로서 '棄兒'라는 말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의 원인은 남자마자 부모가 죽고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로서, '孤兒'라는 말의 본의미가 이것이다. 넷째는 일종의 미신으로서 목정태의 복정암에 낳은 자식은 꺼려서 거두지 않는 것으로 '恐兒'라는 말로 표현된다. 마지막의 원인을 들자면 전통사회에서, 특히 그 말기적 파탄상태를 보일 시기에 백성들이 국가의 조세와 부역이 무거워 이물 피하기위해 자식을 버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牧民心書』(愛民六書) 慈幼篇 및 拙樵 茶山 丁若鏞의 복지관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p. 50 참조.

작하였다. 물론 11월 7일의 “承政院日記” 기사나 그 다음날의 “日省錄” 기사에 보면 유기아 행걸아의 구휼사례가 나타나지만 〈字恤典則〉의 반포이후 1년여 동안 구휼사례를 찾으면 138사례가 된다.

## 2. 〈字恤典則〉의 내용 및 이전제도와의 비교

〈字恤典則〉은 正租의 전교와 9개 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正租의 전교는 구구절절 백성의 비참한 상태 특히 무의무탁한 유기아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왕으로서의 책임과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동 〈典則〉의 9개 절목은 〈經國大典〉이나 〈收養臨時事目〉 또는 “續大典” 〈事目〉에 비해 크게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字恤典則〉의 내용을 社會的 割當, 給與, 傳達體系 및 財政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할당의 측면에서 보면 2절목에서 보듯 행걸아 구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친족책임이 전제된다. 이는 “經國大典” 이래의 친족책임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으로 파악된다. 동 〈大典〉에서는 구휼대상으로서의 아동을 그 연령을 기준으로 유기아와 행걸아로 대별하고 있으며, 행걸아의 경우 4-6세, 7-18세로 세분하여 給與를 제공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듯 유기아는 3세미만의 아동으로서 자력으로 호구를 이어 나가지 못하는 가장 가궁한 처지에 있는 아동이다.

給與의 측면에서는 民家收養의 경우와 賑恤廳留養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民家收養의 경우 자식, 고공 또는 노비로 收養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아동 또는 收養가정에 제공한 給與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가령 증빙문서(立案)를 만들어 준다거나 또는 收養인이 가난하여 충분한 양육이 어려울 때 식량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民家收養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구휼 양육책임이 收養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국가(官)에서 給與할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반면 賑恤廳에서 留養하는 경우 국가에 의한 각종 給與의 제공이 두드러진다.

留養에 있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주거시설이다. 동 〈典則〉 3절목에 따르면 움집(土宇)을 賑恤廳 외창 문 밖에 마련하여 류접할 곳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움집은 일종의 간이주거시설로서 당대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의 주거

아동구호를 위한 또다른 給與는 식량(쌀, 장, 미역)이다. 동〈典則〉에서는 나름의 기준(이를 동〈典則〉에서는 ‘賑聽式例’라고 표현하고 있다)으로 식량을 給與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급여기간을 보면 유기아의 경우 보릿고개 이후까지도 식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행절아의 경우 흉년에만 보리나기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동〈典則〉에서의 식량지급기준이다.

- 행절아(7-18세) : 매일 쌀 7홉, 장 2홉, 미역 2알/1인당
- 행절아(4-6세) : 매일 쌀 5홉, 장 1홉, 미역 2알/1인당
- 유기아(0-3세) : 매일 쌀 1되4홉, 장 3홉, 미역 3알/유기아1인+젖어미1인
- 유기아(0-3세) : 매일 쌀 1되, 장 2홉, 미역 2알/유기아1인+收養母1인(단收養母가 가난한 경우)

여기서 젖어미라는 것은 동〈典則〉 5절목에 의하면 ‘결식여인중에 젖이있는 여인’을 의미한다. 유기아동과 결식여인을 결합하여 그들 모두에게 식량을 지급하여 구제하도록한 젖어미 乳養은 具滋憲 선생의 표현대로 ‘묘안’이 아닐수 없다<sup>7)</sup>.

給與에 있어서 세번째의 것은 의복과 醫療給與이다. 유기아와 행절아를 막론하고 의복이 없는 경우 ‘종을대로 헤아려 지어주고’ 젖어미의 경우에도 의복을 지어주도록 하였으며, 醫療에 있어서는 賑恤廳에서 惠民簿에 분부하여 구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요구호아동의 발견·보고 및 제반급여의 제공과 관련된 傳達體系 또는 담당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요구호아동을 발견·보고하는 일은 賑恤廳 직원 외에도 관리 및 백성들의 소임이지만 給與를 제공하거나 收養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자는 賑恤廳 郎官(6品官)이었다. 그는 收養·留養에 있어서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조사하는 관리였다. 예를들어 동〈典則〉 7절목에 의하면 賑恤廳 낭관은 매달 그름에 아동의 발육, 성장상태를 점검하여 비리가 있을 경우 賑恤廳 고직이와 젖어미를 문책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7) 다산이 흉년에 유리결식자를 위한 응집의 실상을 전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객관앞 한 곳에 땅을 파서 그 깊이는 한 척(尺)남짓하게 하고 그 둘레는 몇장(丈)정도 되게 하여 새끼로 몇 개의 서까래를 엮어 묶은 뒤 줄로 한 겹을 덮어서 위에는 눈이 내리고 옆으로는 바람이 쳐서 살을 예는 듯한 모진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牧民心書〈賑荒六條〉設施篇 참조.

8) 具自憲, 아동복지(개정증보),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69, p.161.

面任은 유기아나 행걸아를 本官(守令)에게 보고하게 되고 본관은 서울에서와같이 구휼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령은 매달 그믐에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왕과 賑恤廳에 보고하게 된다. 지방에서의 아동구휼과 관련 특기할 점은 동〈典則〉9절목에서 보듯 행걸아의 경우 흉년이 들어 진휼을 베푸는 고을, 즉 설진하는 고을에서만 구휼하고, 유기아의 경우에는 어느 고을에서나 구휼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字恤典則〉의 시행을 위한 財政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의 경우 賑恤廳의 곡식이 그 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의 경우에는 동〈典則〉9절목에서 보듯이 常賑穀과 自備穀이 그 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萬機要覽”〈財用篇〉에 따르면,

“구례로는 제도의 恤典은 다 호조의 元倉穀으로 회감하였었는데, 正宗庚申(正租 24년 1800년)년에 원회곡이 부족됨으로 제도의 각양 恤典을 아울러 賑恤廳穀으로써 회감할 것을 廟堂에서 筵稿하여 재결하였다.”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正租 7년에는 호조의 원회곡이 그 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곡식이외에 장과 미역은 지방의 경우 수령이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財政의 측면에서 볼 때 아동구휼과 관련 지방관의 역할내지는 책임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字恤典則〉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도 이전에 비해 국가의 개입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續大典”까지만 해도 국가의 개입은 아동구휼의 핵심적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들, 예컨대 신분상의 쟁송이 있는 경우 행정적, 형사적 처리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면 〈字恤典則〉에서는 給與, 財政의 측면에서 국가개입이 두드러진다. 결국 이전까지의 법령들이 수양관계법의 성격이 강하다면 〈字恤典則〉은 아동법 내지는 구빈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9) 조선시대 지방관의 아동구휼업무를 전통적으로 수령이 해야 할 일곱가지 정사(守令七事)의 하나 이면서 동시에 수령에 대한 감사의 고과항목인 ‘愛民’의 綱에 속하는 일이었다. 다산은 “牧民心書”〈吏典六條〉에서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 IV. 正租 7년 ~8년의 아동구출실상

##### 1. 자료의 성격과 한계

본장에서 활용한 자료는 “承政院日記” 매일의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承政院은 조선조에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거치던 곳이었다. “承政院日記”는 承政院에서 이루어졌던 매일의 정사를 기록한 공식문서로서 “備邊司謄錄”, “日省錄” 등과 더불어 귀중한 사료로서 그 가치는 “實錄”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承政院日記”의 내용중에서 진휼·구출 등에 관한 기사들은 賑恤廳, 한성부의 일로써 왕에게 계하는 경우와 각도의 감사, 관찰사 등의 보고내용등에서 주로 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왕과 대신들과의 문답내용에서도 가끔 중요 사안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字恤典則>이 반포된 시기는 正租 7년 11월 12일이며 반포당일부터 賑恤廳의 일로써 왕에게 구출사실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138개 사례들은 왕에게 보고된 서울의 사례들로서 시간적으로는 正租 7년 11월 12일부터 正租 8년 9월 말까지이다. 기록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趙興纘 以領恤廳 言啓曰 西部 連芝契居 武憲別監 李希重 慕華館 石橋邊 得四朔 遺棄女兒 梁之婢子 於丹 斷爲收養事 來告本廳 而於丹 覓不自食云故 依節目 給料之意 敢啓 傳曰 知道…(“承政院日記” 正租 7년 11월 12일)

徐有防以賑恤廳言啓曰 中部謀呈內 十歲男兒福世 九歲男兒光允金 六歲男兒正月金 合三口領付 故依節目留養之意 敢啓 傳曰…(동 11월 13일)

더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위의 두 사례(실제 아동수는 4명이다)에서 보듯 기록 양식은 우선 보고하는 신하의 성명에 이어 아동발견자의 신상, 발견장소, 아동의 연령, 성별 및 收養인 경우 收養人의 신상, 관의 조치사항 등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오늘날 아동복지기관에서 작성하는 기록(case records)에 비하면 몹시 소략한 것이나 그럼에도 이들 기록들은 부분적인 논의전개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 이유는 불충실하나마 이들 자료들을 토대로 ‘실증적인’ 논의를

본 자료가 갖는 또하나의 한계를 들자면 서울이라는 단일지역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지방에서의 기록은 아직 접할 수 없었지만 전국에 걸친 대체적인 경향 또는 추계는 뒤에 서술할까 한다.

## 2. 아동구출의 실상

유기아동이나 행걸아동을 발견한 장소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이 <표1>을 보면 유기아, 행걸아를 막론하고 거리(가두)에서 발견된 경우가 가장 많고, 일종의 빈민굴을 형성하고 있었으리라 추측되는 다리(개천) 근처가 다음으로 많으며, 발견자의 문앞에서 발견된 경우도 전체 17건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유기아, 행걸아로 나누어 보면 유기아의 경우 거리(가두) - 발견자의 문앞 - 다리(개천)의 순으로 발견장소가 서열을 이루는데 비해, 행걸아의 경우 거리(가두) - 관청(창고) 근처 - 다리(개천) - 시장의 서열을 이루고 있다. 유기아의 경우 문앞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아동을 버리는 부모 또는 연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집에서 거두어 기르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 전통사회 기아습속의 하나인 소위 '개구명받이' 습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견 장소

<표1>

구분	다리 (개천)	거리 (가두)	시장	관청 (창고)	고개	발견자 의문앞	기타	미상	계
유기아	7	24	0	1	2	13	1	2	50
행걸아	12	36	7	13	4	4	0	12	88
계	19	60	7	14	6	17	1	14	138

<표2>는 성별, 연령별 收養, 乳養, 留養 사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2>에 대한 설명에 앞서 收養, 乳養, 留養, 率養 등의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留養이란 용어는 '賑恤廳에서 마련한 留接所에서 수용, 보호한다'는 의미로 행걸아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구출방법이다. 留養은 결국 '일시적인(이 말의 의미는 보릿고개까지의 기한을 두고 구출한다는 것이다) 시설수용보호'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乳養은 유기아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구출방법으로서 입양이란 용어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率養이라는 용어는 '데려다 기른다, 거느려 기른다'는 의미인데

행절아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용어인데 “承政院日記”에서 곧이 收養과 率養을 구분하여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속에 ‘데려다 부려 먹는다’는 의미가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sup>10)</sup> 결국 이들 네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留養 : 일시적인 시설구호

\* 收養(入養) 1. 收養 : 주로 자식으로 삼기위한 입양

2. 率養 : 주로 노비, 고공으로 삼기위한 입양

3. 乳養 : 젖먹이의 경우 ‘젖을 주기위한 입양’

다시 <표2>으로 돌아와서 살펴 보면 유기아의 경우 收養(乳養포함)되는 사례가 거의 전부인 반면 행절아의 경우에는 留養되는 경우가 6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아동들의 입양이 선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收養에 있어서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음도 주목된다. 한편 행절아의 경우 率養되는 사례는 남아 11건, 여아 5건으로 모두 16건에 이르고 있다. 이 <표2>는 많은 것을 시사 해주지만 대체적으로 유기아 49명과 행절아 31명이 民家에 收養된 것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요구호아동의 입양실태에 관한 하나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賑恤廳에 留養된 아동들을 보릿고개가 끝나게 되면 留養이 중단되게 되어 결국은 民家에서 입양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12)</sup> 조선후기에 있어

10) ‘率養’이란 용어는 <字植典則>의 본문내용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절들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 용어가 ‘데려다 부려먹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추정된다.

\* 無子女無 僕者收養許給之法 … (<字植典則> 傳敎)

\* 願爲子女者願爲奴婢者各從其所願施行爲白平 … (<字植典則> 제6절목)

\* 凡流離丐乞之人仰役率養 願爲雇秋宮志, 제3편 考律部 定制 雇工條 雇工立案)

위의 첫 기록에서 ‘律例’은 ‘심부름하는 아이’라는 의미이며 두번째 기록에서는 ‘奴婢’라는 말이 있는 점으로 보아 率養이라는 용어는 동북이나 노비로 부려먹기 위해 입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추정한다. 한편 李覺鍾은 “收養은 民家에서 자녀 또는 노비로 삼기위해 유기아 또는 빈민을 수용, 양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李覺鍾, “朝鮮에 있어서 教廣制度의 沿革” <朝鮮> 1921년 11, 12월호(日文) 참조

11) 이들 네 용어들은 예컨대 乳養된 아동이 나중에 수양된다거나 또는 留養된 아동이 率養, 收養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상호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12) 보릿고개가 끝난 뒤 留養아동의 처리와 관련 서울 西部 萬里食 留養所의 사례는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正祖 8년 4월 30일 진정을 접수할 당시의 留養兒敎는 男 37口, 女 2口 였다. 그러던 것이 5월 2일에는 남 22구는 친족에게 내어주었고 4구는 賑恤廳 役원들이 收養했으며 여1구는 친족에게 내어주어 결국 남11구와 여1구가 계속 留養(여1구) 되었다. 결국 留養중이던 39명이 모두 입양된 것이다. “承政院日記”각 일조 참조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收養했던 것인가? 그리고 收養에 있어서 姓이란 변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의 <표3>은 아동을 收養하는 사람들의 신분과 요구 호아동을 발견, 보고한 자와 收養人과의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연령별 收養, 留養 사례수

<표2>

		남	여	계	%	재분류	%
유 기 아	收養	22	7	29	20.0	49	35.5
	乳養	11	9	20	14.5		
	留養	1	0	1	0.7	1	0.7
행 걸 아	收養	12	3	15	10.9	31	22.5
	率養	11	5	16	11.6		
	留養	53	4	57	41.3	57	41.3
계		110	28	138	100.0	138	100.0

발견자와 收養人의 신분 및 일치정도

<표3>

( )은 %

재종	발견자		수양인			
	사례수	재분류	사례수	일치사례수	재분류	일치사례수
양반	1	11(8.0)	1	0	6(7.5)	4 (35.4)
준양반	10	(100.0)	5	4		
중인	24	90(65.2)	19	12	55(68.8)	29 (32.2)
양인	35		29	10		
천역양인	31		7	7		
천인	26	29(21.0)	12	9	19(23.8)	11 (37.0)
노비	3	(100.0)	7	2		
미상	8	8(5.8)	0	0	0	0
계	138	138(100.0)	80	44 (31.9)	80(100.0)	44

우선<표3>은 요구호아동의 발견자와 수양인과의 일치도가 31.9%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요구호아동을 발견하여 보고한 사람의 3/1정도는 그 아동을 收養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을 발견, 보고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발견사례수와 收養사례수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양인과 발견자와의 일치도가 신분에 관계없이 35% 내외로 비슷하다는 점은 중국적으로 유기아, 행걸아 收養에 있어서 신분의 고저에

그러면 요구호아동의 收養에 있어서 姓이 갖는 의미를 검토해 보자. 이 부분의 결론을 미리 밝히자면 요구호아동의 收養에 있어서는 姓이란 변수는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대개의 아동들의 경우 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름조차도 밝혀져있지 않다. 때문에 이들 성이 없고 이름이 없는 아동들을 收養했던 수양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성이란 것은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고 II과 III에서 시도했던 역사적 비교연구의 연장선상에서 正祖 7년 이후 〈字恤典則〉의 전개 내지는 시행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의 두 기록은 〈자출전칙〉의 시행과 관련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漢城府以五部 飢民白給發賣類啓 自正月始止潤三月白給總六百七十七戶 米三百二十三石零 發賣總二萬二千五百八十九戶 米一萬四千七百八十四石零 京外遺棄兒收養總四百三十六口 京內總七十一名 錢一百四十二兩 布七十一疋 -- 13)

二原春監司九月朔遺棄兒無平事啓本傳于李相承曰 近來凡事稍久則令施 雖以此一事言之 慶尚道外 京外 晉以無平報來 是 印領輪音之本意 賑廳堂上反 諸道監司從重推考況當冬節 尤不宜放忽 以此意 令賑廳 申勅諸道 -- 14)

첫번째 기사는 正祖 8년 정월부터 윤 3월말까지 기민구제에 관한 보고내용이다. 이중 〈字恤典則〉과 관련된 내용은 밑줄을 그은 부분으로서 “지방의 유기아 수양 총수가 436명이고 서울은 71명이며 비용으로 돈이 142량이 지출되었고 포복이 71필 지출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중 유기아수양사례수가 서울의 경우 71건이라는 보고는 본고에서 활용한 “承政院日記”의 수치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承政院日記”에 보면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내에 유기아수양건수는 18건에 지나지 않는다.

위 첫번째 기사는 또한 지방에서의 유기아수양건수가 436건에 이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字恤典則〉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당시 서울과 지방과의 인구밀도, 주민들의 인적구성, 경제적 수준 등이 같았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實錄”의 기록과 “承政院日記”의

13) “正祖實錄” 8년 3월 甲申條(윤 3월 29일조).

14) “承政院日記” 正祖 8년 10월 19일조.

르게 된다. 당시 전국의 인구가 700-750만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전 인구의 약 0.05%에 이르는 규모이다.

두번째 기사는 “承政院日記” 正租 8년 10월 9일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원춘도(강원도) 감사가 보낸 9월말의 장계내용이 유기아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正租가 대신들을 질책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으로 보건데 <字恤典則> 반포이후 1년여간 지난 뒤에는 正租의 표현대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正租 8년에 이르게 되면 연거픈 흉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sup>15)</sup>

## V. 결 론

본고의 논의는 <字恤典則>의 성격과 正租 7-8년의 아동구휼실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고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字恤典則>이전의 아동구휼제도를 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經國大典”이래의 친족책임원칙과 최소한의 국가개입이념 및 민가수양원칙이 일관되게 표방되었으며, 요구호아동의 구휼이라는 측면보다는 이들의 사회적 처리라는 측면이 강하게 표출된 신분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字恤典則>의 성립배경은 正租 6-7년에 걸친 대흉년이라는 자연재해의 결과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자식을 버리는 사례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떠돌며 구걸하는 아동수의 증가로 인해 백성의 부모노릇하는 왕의 책임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성립의 계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3. <字恤典則>은 이전의 법령들에 비해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15) 사회정책으로서의 <字恤典則>의 지속성과 관련 “萬機要覽”과 “牧民心書”의 기록은 일말의 단서를 제공한다. “萬機要覽”은 순조 9년(1809)에 편찬된 일종의 지침서로서 財政, 軍制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萬機要覽” <財用篇> 恤典에는 <字恤典則>의 일부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正租 이후의 왕들이 참조하였으리라 추측된다. 한편 지방관의 修養齋로 그리고 업무지침서로 조선후기에 널리 읽혔던 “牧民心書”에도 <字恤典則>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 正租때 편찬된 “大典通編”이란 법령집에도 <字恤典則>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正租 7-8년 이후 <字恤典則>이 간헐적으로 시행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방하고 있음으로 해서 아동법 내지는 구빈법의 성격을 지닌 법령으로 평가되었다.

4. 아동의 收養과 관련 자식,노비,고공 등으로 입양(收養)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요구호아동의 발견, 보고자와 이들을 收養하는 자가 많은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요구호아동의 收養에 있어서는 아동의 나이가 적을수록 收養人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의 성과 수양인의 성과 일치여부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6. <字恤典則>은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료에 기록된 유기아 수양사례수를 염두에 둘 때 흥년시 유기아입양이 어느정도 보편적인 관습이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7. <字恤典則>의 주요내용이 그 이후의 문헌과 법령집속에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법당시와 같은정도로 시행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흥년시 아동구출법령으로서 그 취지는 조선조 말기까지 계승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사회복지사’의 이론발전과 관련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첫째로 <字恤典則>의 역사적 성격과 관련하여 그것이 흥년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성립계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볼 때는 봉건사회 해체과정에 들어선 조선후기 사회의 변동과 관련, 새로운 보호의 책임을 맡게된 국가기능의 한 전개양상으로 성격지워지며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아동법 내지는 구빈법의 한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적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사회복지사에서 일제시대의 “朝鮮救護令”을 구빈법의 시초로 간주해온 기존의 통념은 재검토를 요한다 할 수 있다. <字恤典則>을 포함하여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관련 새로운 국가기능의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사료와 사실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탐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사회복지사’에서 구빈법은 그 시원이 “朝鮮救護令”보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한국사회복지사’의 한 부분인 ‘아동복지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전통사회에서 입양의 두 양태가 존재하였다는 결코 새롭지않은 인식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가계계승을 위한 문중내의 입양은 현행 민법에도 그 조항이

논의한 收養의 개념은 가계계승을 위한 동성동본의 남아입양과는 다른 양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거의 오늘날의 무의무탁한 아동의 입양(adoption)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무의무탁한 아동의) 입양이 한국전쟁후 대두하였다라든가, 전통적인 입양은 가계계승의 방편으로서 동성동본의 남아에 국한되었다는 등의 일면적인 언명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sup>16)</sup>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고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연구자의 입장을 서술하기로 한다. 본 고는 누차 언급한 것처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논의 전개상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도처에서 무리한 논의의 전개와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의 이러한 한계와 약점은 세계사의 보편성속에서 한국사의 특수성을 조망하고 설명하여 거기에서 이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복지사관'의 개발을 통해 극복되리라 생각한다.

---

16) 추가해서 언급하자면 본 고 IV장의 내용 중 收養, 乳養 또는 率養 등의 내용은 전통사회의 사회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아동입양양태들로 파악되며 이 중 특히 率養은 아동노동 또는 아동학대와 같은 관점에서 깊이 고찰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통사회에서 입양의 다른 한 양태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